

지 역 사 회
경 찰 활 동



FAQ 100선



지역 사회 경찰 활동 FAQ 100선 목록

연번	기능	분류	질문 유형	페이지
1	경무	경찰 채용	장래 꿈이 경찰관인데, 경찰 채용시험의 종류와 채용 규모, 준비 방법 등을 알고 싶어요	1
2			범죄 전력(음주운전, 폭행 등)이나 신체장애가 있어도 경찰을 할 수 있나요?	2
3		경찰 시설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병원, 경찰수련원, 경찰체력단련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3
4	감사	민원	직장인은 업무시간 중 경찰서에 가서 민원업무를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3
5			‘헤어진 가족 찾기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4
6			경찰관들의 불친절, 불만, 비리 등 민원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7	기획 조정	손실 보상	경찰관의 공무수행 중 집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손실 보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8		신분증 요구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 요구하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6
9	범죄 예방 대응	112 신고	112 전화 신고 외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
10			112신고 후 신고자가 신고 결과를 통보받거나 신고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7
11		통역 요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민간인 112 통역 요원’에 지원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8
12		범칙금	경범죄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몇 세인가요? 그리고 범칙금 부과 시 범죄경력으로 기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9
13			범칙금을 내지 못하여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또, 당장이라도 범칙금을 납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0
14		반려견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개 목줄을 풀어 놓고 개가 변을 봐도 치우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는데, 이럴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11
15		불안감 조성	길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문신한 사람들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12
16	정신 질환	우리 동네에 수시로 소리 지르며 행패 부리는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방법이 없나요?	13	
17	CCTV	물건을 분실하여 CCTV(방범용, 개인)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반드시 경찰관이 입회하여야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14	

연번	기능	분류	질문 유형	페이지
18	범죄 예방 대응	CCTV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시청·구청 또는 경찰에 요청하면 설치해 줄 수 있나요? 사비를 들여서라도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4
19		자율 방법대	지역 봉사 차원에서 자율방법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또, 국가나 시·군·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5
20		순찰	우리 집 부근 순찰을 요청하였는데, 순찰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 지점 선정 기준과 실제 순찰하는지(거점장소, 순찰 횟수 등)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15
21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곳이 있어 순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16
22		불법 체류자	우리 동네에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들이 밤에 몰려다니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6
23			경찰서에 접수된 습득물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습득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7
24		유실물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 택시운전자에게 전화하였더니 보상금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고 핸드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8
25		총포 화약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호신용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9
26			대학교 축제, 지역행사 등에서 불꽃놀이를 할 경우,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9
27		자치 경찰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어떻게 구분되고 하는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20
28		교통 교육장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신청방법, 가능인원, 운영시간 등)해야 하나요?	21
29		긴급 차량	레커차량(일반 병원 앰블런스 등) 등이 시끄럽게 사이렌을 켜고 신호 위반하며 주행하는데, 이런 차량들도 긴급차량인지,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
30		생안 교통	집 앞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 통행의 어려움이 있고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나요?	23
31		야간에 굉음을 내며 달리는 폭주족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112 신고 하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나요? 경찰에서 이런 폭주족에 대한 경찰의 단속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4	
32		술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을 받으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벌점을 받나요?	24	
33		자전거 대 자전거나 자전거 대 사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25	

연번	기능	분류	질문 유형	페이지
34	생안 교통	PM	최근 사람들이 개인형이동장치(PM)를 많이 운행하는데, 운행할 수 있는 연령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되고, 도로가 아닌 학교 운동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25
35		모범 운전자	모범운전자들이 도로에 서서 교통경찰관과 같이 수신호를 하며 차량 통제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불응하면 처벌받나요?	26
36		교차로 우회전	차량 운행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진행방향, 우회전 방향)의 초록불 신호를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7
37		범칙금 과태료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
38			교통 범칙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지, 범칙금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8
39			범칙금, 과태료 납부 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8
40			교통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였는데, 다시 과태료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9
41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헛갈리는 용어들이 많은데,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9
42			음주 운전	생계 수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처벌 기준과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3		주변에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 추진 중인 대책이 무엇인가요?	31	
44		운전 면허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45			65세 전후 나이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적성검사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33
46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있던데, 반납 방법과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을 알려 주세요	33
47			여권 발급 전이나 국내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34
48		무사고 운전	무사고 운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5
49		도로 점유	건물 공사로 도로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없이 공사하면 무조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36
50		아동 학대	아동학대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는데,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정당한 훈육과 학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37
51			최근 아동학대 처벌 범위가 방임, 정서적 학대 등 대폭 확대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유형을 알고 싶습니다	38
52	가정 폭력	가정폭력·스토킹 신고를 하고 싶어도 가해자가 저를 알고 있어 신고 하기 두려운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해 주는가요?	39	

연번	기능	분류	질문 유형	페이지
53	생안 교통	가정 폭력	옆집에서 자녀가 엄마를 자주 폭행하고 있어, 이웃인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엄마는 신고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
54			기관중사자가 가정폭력(아동학대)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였는데, 112 신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0
55		스토킹	아는 지인이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계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신고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신변안전 조치가 있을까요?	41
56		층간 소음 (스토킹)	층간소음으로 시비 되어 아랫집에서 계속 올라와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실제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2
57		성폭력	우리 집 근처 성폭력 범죄자 현황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43
58		교제 폭력	교제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 되며 절차와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4
59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교제폭력, 아동폭력 등)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돌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괴롭히려는 경우, 경찰이 보호해 줄 방법이 있나요?	45
60		아동 지킴이	은퇴 후 사회봉사 차원에서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원하고 싶은데, 선발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6
61		청소년 소년범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경력(전과)에 기록되나요?	47
62			최근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증가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촉법소년은 어떻게 처리되고, 보다 강력히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48
63			청소년경찰학교 체험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신청방법, 가능인원, 운영시간 등)해야 하나요?	49
64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는 청소년들로 인해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50
65		실종	어린 자녀가 있어 지문 사전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51
66			지인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집에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져 있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도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한가요?	51
67	중학생 자녀가 집을 나간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52	
68	수사 기획	수사 절차등	상대방을 몰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꼭 관할 경찰서(피의자의 주소지, 범죄지 등)로만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2
69			고소·고발 후 수사 진행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3
70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데, 피해 당사자 외 제3자가 수사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4
71			제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들을 열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연번	기능	분류	질문 유형	페이지
72	수사 기획	수사 절차등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6
73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여비 등을 주는지 등 참고인의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57
74			집에서 쓰는 물건을 경찰이 압수해 갔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57
75		수사 민원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 부서에 문의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8
76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58
77		보상금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에 대해 알고 싶은데, 지금 대상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59
78		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을 보전하고 신속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60
79		개인 정보	신분증과 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악용될까봐 걱정되는데,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요?	61
80	수사	신종 범죄	투자 리딩방 대처요령과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1
81			전세사기 범죄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62
82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요령과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3
83			과태료 고지서가 메일로 와서 첨부파일을 클릭하였더니 악성코드가 깔린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64
84			로맨스스캠에 대한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5
85	도난	도난	도난당한 물건을 돌려 받았더라도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나요?	65
86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접수가 맞는지, 도난신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66
87	형사	신종 범죄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7
88			스미싱에 대한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8
89			큐싱에 대한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9
90			파밍에 대한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0
91		마약 범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마약 여부를 구분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71

연번	기능	분류	질문 유형	페이지
92	형사	교통 사고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가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피해자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2
93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고장)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들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나 경찰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2
94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진행한 듯 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3
95			차량 문콕이나 이중주차 해놓은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신고해야 하나요?	73
96			차량을 운행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팔을 쳤는데, 상대방은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염려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4
97	경비	대형 행사	공연 등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75
98		소음 단속	집회시위 소음으로 영업장(식당 등) 피해가 심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소음단속 기준과 경찰에서의 처리 절차를 알려 주세요	76
99	치안 정보	집회 신고	집회·시위 신고 후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76
100	안보 수사	기술 유출	우리 회사의 전문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112신고나 일반 고소 절차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77
101		대남 전단 무류등	불온서적이거나 대남 전단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77
102		공사 중 실탄, 무기 등을 발견하거나 등산 중 대남풍선을 발견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8	
103		안보 사범	간첩 등 안보 사범이 많이 있는지, 실제 얼마나 검거되는지 알 수 있나요?	78
104	국제 협력	외국인 범죄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79
105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검거할 수 있나요?	80

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

1

장래 꿈이 경찰관인데, 경찰 채용시험의 종류와 채용 규모·준비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

- 경찰 채용의 종류에는 △ 순경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경위 공개경쟁채용 △ 경찰대학교 입학이 있으며, 선발 인원과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경 공개경쟁채용(순경공채) ⇨ 매년 선발인원 상이

- 필기(50%) : 객관식 3과목(헌법, 형사법, 경찰학) / 검정제(한국사, 영어)
- 체력(25%) : 종목식 체력검사(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 면접(25%) : 상황판단영역·문제해결능력, 경찰윤리의식 등 평가

2) 경력경쟁채용(경채) ⇨ 매년 선발인원 상이

- 분야 : 변호사, 공인회계사, 항공, 경찰특공대, 외사, 사이버수사, 무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발 (순경~경감)
- 응시자격 :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자격증·경력·학위 소지자 등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험방법: 실기 또는 필기 / 체력(순환식 체력검사) / 면접

3) 경위 공개경쟁채용(경위공채) ⇨ 매년 50명 선발(일반 40·세무회계 5·사이버 5)

- 필기(50%) : 객관식 5과목(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선택 과목1) / 검정제(한국사, 영어)
- 체력(25%) : 순환식 체력검사(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 면접(25%) : 상황판단영역·문제해결능력, 경찰윤리의식 등 평가

☞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 참고

4) 경찰대학교 입학기준('25년도 기준)

- 모집인원 및 전형 : 신입생 50명(일반전형 : 44명,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3명,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 3명)
- 지원 자격 : 만17세 이상 42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는 수능시험일 전 타국적 포기 필요)이면 가능
- 전형 방법 : △ 1차 시험(200점) △ 신체검사 △ 체력검사(50점) △ 적성검사 △ 면접(100점) △ 학생부(150점) △ 수능성적(500점)

☞ 자세한 경찰대학 입시 관련 문의는 경찰대학 인재선발계(041-968-2355)로 확인 가능

2

범죄 전력(음주운전·폭행 등)이나 신체장애가 있어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교육정책>

○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범죄 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범죄전력 외 기타 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참고

○ 경찰공무원 응시 신체조건(장애 유무와는 관계없음)

-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 ※ 팔다리와 손·발가락, 척추, 관절 등에 관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 시력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각 : 색맹이 아니어야 하며, 적색약(약도 제외), 청색약, 녹색약은 응시 가능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 사시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혈오성, 음란성, 차별성, 기타, 노출여부 등 고려)

3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병원·경찰수련원·경찰체력단련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병원은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립병원으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체력단련장의 경우, 경찰공무원 등의 체력 유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각 소재지(용인, 아산) 거주 주민 대상으로만 개방하여 운영 중입니다. ○ 경찰수련원의 일반시민 이용은 어렵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련원은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의 심신단련, 정서함양 및 직무교육·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직원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으로 사용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 퇴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③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div> 	

4	직장인은 업무시간 중 경찰서에 가서 민원업무를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민원 사무 중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경력증명서 조회, 사건접수증 발급 신청 등 65종은 인터넷(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전국 경찰관서는 점심시간에도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어,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국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5,5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경찰 증명서 3종(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국·영문)을 지문인식을 통해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25년부터 '경찰민원24 홈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으로, 경찰 민원을 PC와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	‘헤어진 가족 찾기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6·25전쟁 △ 유아 시절 미아·고아 △ 고아원 입소·해외 입양 등으로 가족과 헤어진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과 신청 대상 간의 관계가 「민법」상 가족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헤어진 가족 찾기 제도는 각 경찰관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에 있는 신청서 서식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경찰관들의 불친절, 불만, 비리 등 민원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들의 불친절, 불만, 비리 등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각급 경찰관서에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서식(진정서)을 작성하여 신청·접수 - (우편·팩스) 경찰관서의 주소나 팩스 번호를 안내받아 우편·팩스로 전송 - (온라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경찰민원포털), 문서24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경찰관의 공무수행 중 집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손실보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규제개혁법무>

- 2014년도부터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① **책임이 없는 자나**, ②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손실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인터넷(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에서 ‘손실보상’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건발생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보상금 지급 청구서 △견적서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 필요
- 청구 후 시·도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한 건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를 보상할지 심의·의결하며(1~2개월 상당 소요)
 - * 보상심의의 공정성·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변호사·교수 등)로 구성
 - 보상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해 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 ▶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 요구하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규제개혁법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의 일환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요구인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제1항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질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증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인의 주거 확인**을 위한 경우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나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때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미사건 현행범인으로서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신분증의 제시요구도 불응하여 경찰관이 주거를 명백하게 확인 할 수 없는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등 제시 요구**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는 경찰관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증과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155조(벌칙)에 따라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될 수 있습니다.

9

112 전화 신고 외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안상황>

- 경찰 긴급신고는 112로 ‘전화’ 및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과 ‘112신고앱’ 및 ‘112신고포털(www.112.go.kr)’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조자료 >

- ▶ (112문자 신고) 신고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 가능
- ▶ (112신고앱 신고) 긴급 상황 시 △전화 △문자(50MB) △10초 녹음 신고 △영상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 (112신고포털 신고) 홈페이지(www.112.go.kr) 모바일·PC 버전 운영 ⇨ △112신고앱과 동일한 신고 기능 탑재 △최근 1년간 신고 내역 조회 가능 △112관련 홍보 게시판 운영

10

112신고 후 신고자가 신고 결과를 통보받거나 신고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치안상황>

- 112신고자에게는 신고접수 시, 경찰관 출동 시, 신고 사건 종결 시 신고 처리와 관련된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 112신고내역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FAX·인터넷(www.open.go.kr)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방법 >

- ▶ 신고자 본인이 경찰관서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FAX·인터넷(www.open.go.kr)으로 정보공개 청구
- ▶ 공통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전화가입 사실증명서 또는 전화요금 납입영수증 등 신고 당시 휴대전화 전화 명의인이 확인 가능한 서류
- ▶ 본인의 전화가 타인의 명의이거나, 타인의 전화사용 시 반드시 명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함께 제출
- ▶ 제3자가 신고하였을 경우 사전에 제3자의 위임장, 전화가입 사실확인원 첨부하여 신청
-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11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민간인 112 통역 요원’에 지원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치안상황>

- 112신고 외국어 통역요원 응시 자격은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자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 채용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

▶ 제13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경범죄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몇 세인가요? 그리고 범칙금 부과 시 범죄경력으로 기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죄예방정책>

- 경범죄 범칙금은 만18세 이상부터 처분 가능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상 만18세 미만인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되지 않아 통고처분이 불가능
-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범죄경력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에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과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벌을 과하도록 하는 절차로 통고처분된 범칙금은 벌금이 아닌 행정제재금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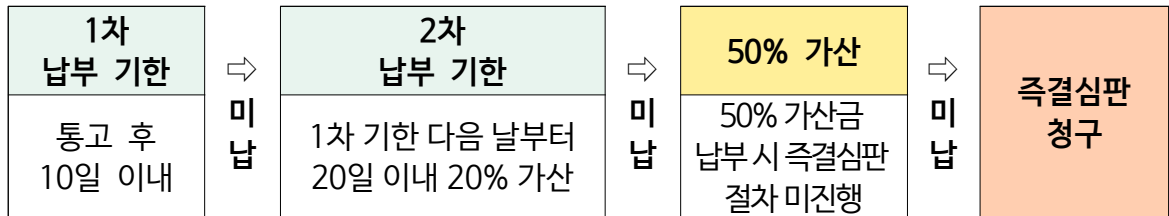
- ▶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13

범칙금을 내지 못하여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또, 당장이라도 범칙금을 납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예방정책>

-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단, 범칙금 납부 기간이 지났더라도 즉결심판 선고 전이라면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으로 범칙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기간이 지난 후 범칙금 납부 방법
 - 기간이 지나면 가상계좌 입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 연락하여 범칙금 납부 의사 표시 → 가상계좌를 재생성하여 범칙금 납부 가능

<범칙금 미납 시 진행 절차>



<경범죄 처벌법>

- ▶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개 목줄을 풀어 놓고 개가 변을 봐도 치우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는데, 이럴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치안상황>

- 「동물보호법」상 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은 지자체장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이 지자체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민원콜센터(120 등)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보호법 >

▶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제1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5

길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문신한 사람들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지역경찰운영>

- 길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이 일반 대중에게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협박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의 은닉 휴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 :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6

우리 동네에 수시로 소리 지르며 행패 부리는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방법이 없나요? <범죄예방정책>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는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을 경우,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최대 7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관이 동의를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내외과적 질환·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할 경우는 입원이 불가능
- 응급입원은 자의·동의·보호·행정입원 등 다른 입원을 할 여유가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응급입원을 진행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지 않은 경우,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행정입원(진단 및 보호 요청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112신고를 통해 상황을 잘 전달해 주시고, 신고를 받은 지역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정신응급 경찰 대응팀’을 통해 응급입원 또는 면담 진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17	물건을 분실하여 CCTV(방범용, 개인)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반드시 경찰관이 입회하여야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범죄예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의 경우 직접 개인정보처리자(자치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게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본인 외 개인정보를 모두 보이지 않게 처리하여야 하며, 본인이 촬영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입회하더라도 영상을 직접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 단순 물건 분실의 경우 분실자 본인이 촬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범죄혐의 또한 즉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먼저 영상을 열람한 후 범죄혐의점이 발견된 경우에 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관련 법령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div>	

18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시청·구청 또는 경찰에 요청하면 설치해 줄 수 있나요? 사비를 들여서라도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예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구청 등에서 CCTV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범죄예방·교통단속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기에, 검토 결과에 따라 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 앞 공간이 순수한 사적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ex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라면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설치 장소·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③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div>	

19	지역 봉사 차원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싶는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또 국가나 시·군·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범죄예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자격) △「자율방범대법」 제5조에 규정된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범죄경력 등)가 없는 사람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자율방범대원의 자격(거주·거소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 (신청 절차) 거주 중인 읍·면·동 자율방범대 방문 → 자율방범대장의 추천 → 경찰서장 위촉 ☞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 [별표 제9호서식] 대원 신청 서류 작성 필요 ○ (지원 현황)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야식비 △복장·장비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	우리 집 부근 순찰을 요청하였는데, 순찰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 지점 선정 기준과 실제 순찰하는지(거점장소, 순찰 횟수 등)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지역경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 지점의 선정 기준은 지구대, 파출소별 치안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은 원룸 밀집 지역이나 골목길 등 사건·사고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위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에게 순찰을 요청하고 실제 순찰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청한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또한, ‘순찰신문고’를 통해 순찰을 요청하는 경우 ‘순찰여부 회신’을 선택 후 회신 메일주소를 기입하면 경찰관이 순찰을 실시한 후 순찰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순찰 요청 방법 :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접속 → 순찰 시간·장소, 요청 사유 등 입력 → 순찰 요청자 정보 및 이메일 주소(순찰 사항 여부 등 발송)를 기입 →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 회신 내용(예시)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경찰서입니다. 이번 2025년 0월 0일 기준으로 귀하가 요청하신 장소를 총 0회 순찰하였으며,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에 통보,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으로 탄력순찰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div>

21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곳이 있어 순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지역경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흡연, 음주 등 비행 행위 목격시 △ 112신고, △ 순찰신문고, △ 안전신문고 등 경로로 순찰을 요청할 수 있고, 세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112신고 요청) 순찰요청 사유와 장소, 목격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112접수 요원에게 상세하게 전달하여 순찰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순찰 요청,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순찰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요청 예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안녕하세요. ○○공원에서 최근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해롭고, 주변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순찰 요청 방법 : ‘순찰신문고’ (patrol.police.go.kr) 접속 → 순찰 시간·장소, 요청 사유 등 입력 → 순찰 요청자 정보 및 이메일 주소(순찰 사항 여부 등 발송)를 기입 → 요청 	

22	우리 동네에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들이 밤에 몰려다니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범 관련 업무는 출입국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경험을 갖춘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수행하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다’라는 유형의 신고를 경찰이 접수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종결합니다. -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폭행·주거침입 등 형벌 법규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 동법 제101조(고발)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div>	

23

경찰서에 접수된 습득물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습득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죄예방정책>

- 경찰청은 유실물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일반 국민이 습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보관 여부는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내 ‘습득물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구대·파출소에 접수된 습득물은 분실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반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습득물 사진, 습득 경위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서로 이관합니다. 이후 경찰서 유실물 업무 담당자가 습득물을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유실물 처리 절차>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 택시운전사에게 전화하였다니 보상금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고 핸드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예방정책>

- 택시기사가 핸드폰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
 - 7일 이내에 분실자(소유자)에게 반환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7일이 경과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때, 택시기사가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핸드폰을 분실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택시기사가 핸드폰을 경찰관서에 제출한 경우
 - 택시기사가 7일 이내 경찰관서에 습득물을 제출해야 습득자의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이러한 경우, 경찰관은 분실자와 택시기사(습득자)에게 보상금의 범위를 안내하고 분실자에게 핸드폰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후의 보상금 관련 사항은 민사사안임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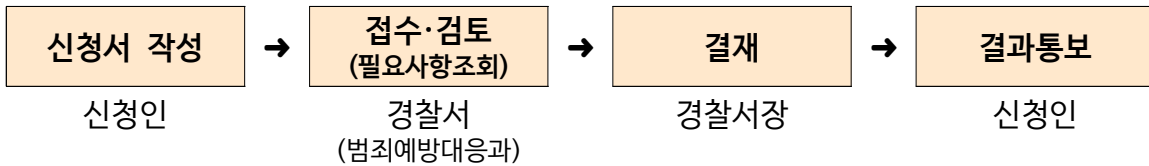
-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습득물의 반환)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5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호신용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범죄예방정책>

- 「총포화약법」 제12조(소자허가)에 근거하여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는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말하며(「총포화약법 시행령」 제6조의2), 일반적으로 압축가스가 아닌 분사 방식으로 발사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전자충격기란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며(「총포화약법 시행령」 제6조의3), 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표16의3)
 - ※ 실효전력(10W 이내), 절연상태(5,000V~0.5mA), 실효전류(0.05A(50mA) 이내), 최대전압(60,000V 이내)
- 허가 절차는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허가신청서(별지 제 10호의2 서식)를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범죄예방계)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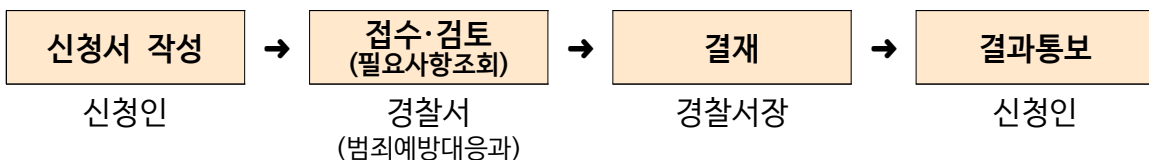


26

대학교 축제, 지역행사 등에서 불꽃놀이를 할 경우,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범죄예방정책>

- 「총포화약법」 제18조(화약류의 사용)에 근거하여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 화약류의 사용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 (예시)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 허가 절차는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허가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범죄예방계)로 제출하면 됩니다.
 - 꽃불류의 사용허가 신청 시에는 △사용순서대장 △사용장소 및 그 부근 약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허가 절차>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어떻게 구분되고 하는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치경찰>

- 「경찰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거나 신분을 국가직 또는 지방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 기존의 조직 체계는 유지하되,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분산한 형태입니다.
- ☞ 단, 수사사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 국가경찰사무(「경찰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자치경찰사무(「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경찰법」 제4조(경찰의 사무) ① 2. 자치경찰사무: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 定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 定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 定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대통령령 定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이때의 지휘·감독 대상은 시·도경찰청장으로,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 소속 공무원(예.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예.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여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 따라서,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수행 방식 및 권한은 자치경찰제 시행 전후 차이가 없으며, 모든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8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신청방법, 가능인원, 운영시간 등)해야 하나요? <교통안전>

- 온라인 예약(△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전화 예약, 공문발송 예약 등이 있으며, 어린이 교육장마다 세부적인 예약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장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전화로 문의하면 정확한 이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또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지만, 세부적인 운영시간은 교육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오전(10:00~12:00), 오후(13:00~15:00), 주말과 공휴일은 대부분 휴관
- 단체의 경우 20~50명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주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생 까지 신청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용을 원하는 교육장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교통교육장 현황(일부)>

지역	교육장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	신천 어린이 교통공원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33	02-413-0004
	서초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원	서초구 바우뒀로12길 43	02-2057-1199
	새싹 어린이 교통공원	강서구 방화동 581-7	02-2664-4987
	양천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목동남로 106-23	02-2652-1582~3
	키즈오토파크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 대공원 내	02-455-7119
	로보카폴리 어린이 교통공원	노원구 덕릉로 483	02-973-3925
경기지역	안양 어린이 교통공원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	031-477-1610
	부천 어린이 교통나라	부천시 소사로 456	032-340-0955
	성남 어린이 교통공원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18 황송공원 내	031-729-3656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광명시 소하일로 51	02-897-3223
기타지역	원주 어린이 교통공원	원주시 동부순환로 179	033-745-9337
	제주 어린이 교통공원	제주시 명림로 437	064-710-6281~2

※ 전국문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1577-1120)

29

레커차량(일반 병원 앰블런스 등) 등이 시끄럽게 사이렌을 켜고 신호 위반하며 주행하는데, 이런 차량들도 긴급차량인지,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기획>

-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 *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는 경찰용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 레커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병원 앰블런스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후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경찰에서는 레커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 및 캠퍼코더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30

집 앞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 통행의 어려움이 있고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나요? <교통안전>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과 자치단체 모두 조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주·정차 위반에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은 자치단체로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위반자)가 확인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동 명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물 조치는 어렵습니다.
 -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보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동법 제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3. 제160조 제2항 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 제3항, 제29조 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31	야간에 굉음을 내며 달리는 폭주족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112신고 하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나요? 경찰에서 이런 폭주족에 대한 경찰의 단속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은 폭주족 근절을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 예방·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과 폭주 전력자 대상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 112신고 분석, SNS 및 인터넷 카페 모니터링, 폭주족 출몰 지역 등 사전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수립 및 단속 -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폭주족들은 국가 주요 기념일 위주로 연례행사처럼 등장하고 있어 이에 맞춰 집중단속 기간 운영 ○ 그 밖에도 경찰청은 폭주족 근절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하여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적극 수사하고 있으며,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 행위자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폭주족 중점 단속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험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굉음유발: 승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범칙금 - 급차선 변경(칼치기): 승용차 3만원 / 이륜차 2만원 범칙금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div>	

32	술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을 받으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벌점을 받나요?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 운행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일 뿐이며, 운전면허에는 벌점 등 행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3 **자전거 대 자전거나 자전거 대 사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교통안전>**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또는 물건을 손괴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54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34 **최근 사람들이 개인형이동장치(PM)를 많이 운행하는데, 운행할 수 있는 연령,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되고, 도로가 아닌 학교 운동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안전>**

-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13세 이상의 사람만 운전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며,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도로교통법」상 제재는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 학교 운동장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보조자료>

- ▶ PM 관련 주요 「도로교통법」 규정
-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35

모범운전자들이 도로에 서서 교통경찰관과 같이 수신호를 하며 차량 통제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불응하면 처벌받나요? <교통기획>

-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른 의무가 있으며, 수신호에 불응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행위	근거법조문(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4. 신호·지시 위반	제5조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벌점
14. 신호·지시 위반	제5조	15

36	차량 운행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진행방향, 우회전방향)의 초록불 신호를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를 이용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른 통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정지 의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우회전 절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②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③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후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37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이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민원24 (e-fine) 웹사이트 및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정부24(국민비서)를 통해서도 교통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e-fine)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 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당시자) 외 가족 등 제3자에게 발부된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8

교통 범칙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지, 범칙금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안전>

- 교통 범칙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 ‘교통민원24(e-fine)’을 통해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6조(범칙금의 납부)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 ‘교통민원24(e-fine)’을 통해 발부된 범칙금을 확인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39

범칙금, 과태료 납부 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안전>

- 범칙금, 과태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가합니다.
- 납부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 ‘교통민원24(e-fine)’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 카드 납부 시, 부과된 범칙(과태료) 금액의 1%의 수수료가 가산되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40	교통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였는데, 다시 과태료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과태료는 운전자(위반자)를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며, 교통범칙금은 운전자(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는 고지서입니다. - 따라서, 부과된 교통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고지서를 받는 당사자(본인)가 스스로 운전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범칙금으로 전환 이후 다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발부되는 교통과태료로 재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경찰청에서는 ‘교통민원24(e-fine)’를 통해 교통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시 과태료로 전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1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헛갈리는 용어들이 많은데,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범칙금, 과태료는 모두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 그 성격과 효과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법원의 정식 재판을 거쳐 부과되며, 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주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를 범했을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돈을 납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미납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아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예로, 무인단속 카메라나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경우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42

생계 수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처벌 기준과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안전>

-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기준은 일반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 그러나,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감경 절차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정지로 감경될 수 있으며, 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 추진 중인 대책이 무엇인가요? <교통안전>

-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단속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단속(건)	130,772	117,549	115,882	130,283	130,150

※ 음주운전 사망자 : ('22) 214명 → ('23) 159명

- 2024. 10. 25.부터는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청은 2023. 7월부터 대검찰청과 협력하여 음주운전 차량 몰수제를 실시하여 1년여 만에 444대의 차량을 몰수하였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교육과 홍보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44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기획>

-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경우는 즉일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장 빠르게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02-2193-7600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02-2092-0100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02-2669-2998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02-300-3500
부산지역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051-310-7600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 남구 용호로 16	051-610-8000
기타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032-810-2300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053-320-2400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대전시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042-250-3300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우치로 201	062-530-6114

※ 전국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은 27개로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주소 및 연락처 등 확인가능

45 65세 전후 나이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적성검사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기획>

- 65세 미만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갱신(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포함)하여야 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갱신(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포함)하여야 합니다.
-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마다 갱신(적성검사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치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구 분	2 종	1 종	단안 장애인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10년마다 적성검사	3년마다 적성검사 (‘16.11.30. 시행)
65세 이상 70세 미만	5년마다 갱신	5년마다 적성검사	
70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적성검사		
75세 이상	3년마다 적성검사 시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치매검사 실시 의무화(‘19. 1. 1. 시행)		

46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있던데, 반납 방법과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을 알려 주세요 <교통기획>

- 고령자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 * 서울시: 70세 이상, 파주시: 75세 이상, 성남시·춘천시: 65세 이상 등 자치단체별로 상이
- 면허증 반납 제도는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되었으며, 면허증 반납시 금융혜택 제공,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지급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단, 지자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혜택 수준은 상이)
-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발급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여권이 없어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권이 필요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준비물로는 여권 사본이 필요하지만, 여권이 없는 경우 다른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면허 정지기간에 신청한 경우, 면허정지가 풀린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 참고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과태료 미납 건이 없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성명과 여권의 영문 성명이 일치해야 하며, 서명도 동일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모두 소지해야 합니다.

48 무사고 운전자를 신청하고 싶는데, 신청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

- 무사고운전자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 무사고 기간: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
 - 표시장 종류별 해당 기간(10,15,20,25,30년) 동안 교통사고(인적 피해, 음주, 무면허, 물적피해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 및 같은 기간 운전면허가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
 - 무사고운전자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확인: 매년 초 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후 약 40일간 신청·접수
 - 구비서류: ①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사본 1부, ③ 이력서(증명사진 2매 첨부), ④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제출: 가까운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신청 후 절차 진행 : 신청 → 접수·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 처리 기간은 약 1일이며, 수수료 없음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종 별	교통성실장	교통발전장	교통질서장	교통삼색장	교통안전장
표시장					
무사고 기 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 내지 제138조 참고

건물 공사로 도로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없이 공사하면 무조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기획>

- 「도로교통법」 제69조에서 규정한 도로공사(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의 공사*)가 아닌 그 외 도로공사나 도로의 점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 과거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공사 미신고에 따른 처벌 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어, 공사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신고 수리하고 있음(법무부 법령해석 2016.6.1.)
- 그러므로 건물 공사로 도로를 점용(예를 들어, 도로상 건축자재 등 적치) 하려는 경우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위반 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 법령>

-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 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7. 제69조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 국토부 도로운영과-3930(2017.9.28.) 도로점용 허가업무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공사 차량 도로점용 허가대상 여부) 크레인, 펌프카, 레미콘 등 공사용차량등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5조 제11호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으로 보아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동학대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는데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정당한 훈육과 학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여성안전기획>

- 아동학대란 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것, ②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③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대와 훈육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례는 ‘훈육’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 대화나 그 밖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 ▶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상황이었는지 여부
 - ▶ 영유아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보육 방법의 허용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됨
-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훈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면 학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처벌 범위가 방임, 정서적 학대 등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유형을 알고 싶습니다 <여성안전기획>

- 「아동복지법」상 학대 유형은 크게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유기·방임으로 정의되는데, 그중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이해하고 유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 ▶(언어폭력) △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 △ 무시·모욕·원망·거부·적대·경멸적인 언어폭력
 -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 아동의 정서발달 및 감당하기 어려운 것(노동착취 등)을 강요
 - ▶(정서적위협) △ 공포 분위기 조성 △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집 밖에 세워두는 행위
-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물리적방임) △ 의식주 미제공 △ 출생 미신고 △ 불결한 환경·위험상태에 방치
 - ▶(교육적방임) △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결석 방치
 - ▶(의료적방임) △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 미실시 △ 필요한 의료적 처치 미실시 △ 장애아동의 치료 거부

가정폭력·스토킹 신고를 하고 싶어도 가해자가 저를 알고 있어 신고하기 두려운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해 주는가요? <여성안전기획>

- 가정폭력·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공권력 개입을 통해 초기부터 범죄를 차단해야 합니다.
- 경찰관은 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판사의 결정을 받아 임시·잠정조치를 집행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 없이도 긴급임시·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고접수 및 수사 과정에서 가명조서를 활용하여 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스토킹행위+지속·반복성)로 구분되며 스토킹범죄(잠정조치)는 물론 범죄에 이르기 전인 스토킹행위(긴급응급조치)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가능

가정폭력		스토킹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①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임시조치 사후 청구 의무	①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등 위탁 ⑤ 유치장·구치소 유치 ⑥ 상담 위탁	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사후 승인 청구 의무	① 서면 경고 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 유치장·구치소 유치

- 또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경찰서(담당 수사관,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에 제출하시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
- (안전조치 유형) 위험성 판단 후 심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 경고 ▲스마트워치 대여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	위험도 등급별 권장 안전조치 수단	추가조치
낮음	▶112시스템 등록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개인정보 변경
보통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높음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매우높음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민간경호	

53	옆집에서 재녀가 엄마를 자주 폭행하고 있어, 이웃인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엄마는 신고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안전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령상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경찰은 모든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재발우려가정 지정·관리, 지자체 중심 다기관 협업체계 운영 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	기관종사자가 가정폭력(아동학대)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였는데, 112신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안전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아동학대는 암수성 범죄로 사소한 징후를 한시라도 빨리 포착하고 미리 막는 것이 최선으로 이웃 또는 주변 사람의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신고자의 정보는 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행위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법령></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iv>	

55

아는 자인이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계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신고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신변안전 조치가 없을까요? <여성안전기획>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경찰서(담당 수사관 또는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 제출하시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
- (안전조치 유형) 위험성 판단 후 심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 경고 ▲스마트워치 대여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	위험도 등급별 권장 안전조치 수단	추가조치
낮음	▶112시스템 등록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개인정보 변경
보통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높음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매우높음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민간경호	

56

층간소음으로 시비 되어 아랫집에서 계속 올라와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실제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안전기획>

-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로 계속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고, 실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로 주거지에 찾아갈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상대방 등에게 접근,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층간소음에 대한 스토킹 신고·고소 등이 접수되면 스토킹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의율 중으로,
- 이때, 지속·반복된 스토킹 행위가 입증될 수 있도록 다각적 증거 수집 △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112신고 등을 확인하여 진술 확보 △ 범죄일람표를 이용하여 범죄 일시와 사실 등을 구체화 △ 경찰 출동이나 피의자 조사 등 수사 시 피의자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층간소음 보복행위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2023도10313 층간소음 관련 대법원 첫 판결)

-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빌라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로, 2021. 10. 22. 02:15경부터 11. 27. 03:45경까지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등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
- (대법원 판결이유)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 (중략)……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사정들에 비추어……(생략)……

57

우리 집 근처 성폭력 범죄자 현황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안전기획>

- 국민 누구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후 본인의 거주지나 관심 있는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력 등록정보 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성폭력처벌법」 상 해당 성범죄로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
- **(공개 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
- **(주의 사항)**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 ☞ 열람한 정보를 신문, 잡지,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교제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며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안전기획>

- 교제폭력 가해자는 형법 등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피해자 관계와 범죄혐의를 검토하여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거나 스토킹행위**(범죄)가 확인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실혼 여부 판단 ⇒ 전체 문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실혼 인정

** 이별 통보 후 차단 등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행위가 있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판단

가정폭력		스토킹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①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임시조치 사후 청구 의무	①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등 위탁 ⑤ 유치장·구치소 유치 ⑥ 상담 위탁	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사후 승인 청구 의무	① 서면 경고 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 유치장·구치소 유치

- 또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경찰서(담당 수사관 또는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 제출하시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
 - (안전조치 유형) 위험성 판단 후 심의 절차를 거쳐 △ 가해자 경고 △ 스마트워치 대여 △ 맞춤형 순찰 △ 임시숙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	위험도 등급별 권장 안전조치 수단	추가조치
낮음	▶ 112시스템 등록	▶ 가해자 경고 ▶ 피해자 권고 ▶ 개인정보 변경
보통	▶ 112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높음	▶ 112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임시숙소 ▶ 보호시설 연계 ▶ 스마트워치	
매우높음	▶ 112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임시숙소 ▶ 보호시설 연계 ▶ 스마트워치 ▶ 지능형 CCTV ▶ 민간경호	

59 가정폭력(교제폭력, 아동폭력 등)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돌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괴롭히려는 경우, 경찰이 보호해 줄 방법이 있나요? <여성안전기획>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112신고·전후 사정 등 묵시적·추정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간주
- 한편,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①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④ 친권행사의 제한 ⑤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	① 퇴거 등 격리 ②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④ 피해아동 보호위탁 ⑤ 피해아동 치료위탁 ⑥의2 피해아동 상담·치료 위탁 ⑥ 피해아동 가정위탁 ⑦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⑧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또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경찰서(담당 수사관 또는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 제출하시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
 - (안전조치 유형) 위험성 판단 후 심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 경고 △스마트워치 대여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	위험도 등급별 권장 안전조치 수단	추가조치
낮음	▶112시스템 등록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개인정보 변경
보통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높음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매우높음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민간경호	

60

은퇴 후 사회봉사 차원에서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원하고 싶은데, 선발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보호>

- 아동안전지킴이는 △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에 무리가 없는 분 △ 범죄경력이 없는 분 (특히 아동 관련 범죄경력자는 지원불가) △ 아동보호에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의지가 있는 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고 확인: 모집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진행하며,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
 - ② 지원서 제출: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분증 사본, 기타 요청 서류 등을 준비하여 경찰서 방문 접수나, 인터넷 접수
 - ※ 전화 문의 : 경찰청민원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지원절차 확인 가능
 - ③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를 통해 나이, 건강 상태, 범죄경력 등 검토
 - ④ 면접: 봉사활동 의지, 아동 안전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 활동 경험 등 질문
 - ⑤ 범죄경력조회: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
 - ⑥ 교육이수: 선발된 후 아동 안전 및 관련 법률, 응급상황대처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교육은 경찰서에서 진행되며,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활동이 가능
- 근무는 2인1조 또는 3인1조로 하루에 3시간(오후 2시부터 5시)씩 주5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나 놀이터 등을 순찰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1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경력(전과)에 기록되나요? <청소년보호>

-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소년피의자(14세~19세 미만)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전과)에 기록되며,
 - 형사처벌이 아닌 검찰종결(기소유예 등)이나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자료로 기록됩니다.
- 다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10세~14세 미만)이나 우범소년(10세~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범죄경력이나 수사자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의 종류 및 조치>

구분	정의	연령	경찰조치	처분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검찰송치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법원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우범소년	▶ 우범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우범성이 있는 소년 -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 음주소란 및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10세 이상 19세 미만		

62 최근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증가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촉법소년은 어떻게 처리되고, 보다 강력히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보호>

- 경찰관이 촉법소년을 발견하면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개시하여 소년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하며, 이때 경찰관서에서 작성한 송치서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소년법 제32조, 제33조)

구분	구분	내 용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연령
사회 내 처우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시설 내 처우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63

청소년경찰학교 체험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신청방법, 가능 인원, 운영시간 등)해야 하나요? <청소년보호>

- ‘유스폴넷’ 홈페이지(theyouthacademy.police.go.kr) 內 ‘우리동네 청소년경찰학교 찾기’를 통해 방문 희망지를 검색하여 체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희망 일자와 시간, 신청자명, 연락처, 신청기관명 등을 기입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4세 미만)를 작성·등록하면 됩니다.
- 방문 가능 인원은 청소년 경찰학교 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해당 관서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현황(56개소)>

서울(10)		부산(5)		대구(3)	인천(3)	광주(2)	대전(3)	울산(2)	경기남부(5)	
강북·강서·은평·서초 동대문·노원·영등포 도봉·서대문·동작		사상·동래 부산진·해운대 부산남부		중부 수성 달서	중부 계양 남동	북부 서부	중부 서부 동부	중부 남부	안양만안 의왕·수원중부 분당·부천소사	
경기북부(4)		강원(3)	충북(2)	충남(2)	전북(3)	전남(2)	경북(2)	경남(3)	세종(1)	제주(1)
일산동부 남양주남부 의정부·파주		원주 강릉 춘천	청주상당 괴산	천안서북 공주	전주완산 익산 군산	순천 목포	구미 포항남부	김해중부 진주 창원서부	북부	동부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는 청소년들로 인해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경찰관은 음주·흡연 청소년에 대해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약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에 따라 술·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습적으로 음주·흡연하는 등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면담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우범소년으로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수거·파기)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품명·수량·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 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 ▶ 「청소년보호법」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65 **어린 자녀가 있어 지문 사전등록을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소년보호>**

- 어린 자녀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은 ① 경찰관서 직접 방문, ② 유치원·어린이집 등 출장 등록, ③ 안전드림 앱·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가등록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등록)** 가까운 경찰서·지구대에 방문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세요.
※ 경찰관서별 장비와 인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먼저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현장 등록)**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단체 현장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체 현장등록 신청 및 진행 여부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 **(자가 등록)** 안전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등록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은 지문 정보의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홈페이지에서 신규 등록을 한 경우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앱을 통해 지문 정보를 별도로 등록해 주세요.

66 **지인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집에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져 있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도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보호>**

- 실종신고는 누구라도 가능하며,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신고처리 절차>

구분	신고 접수	출동 및 초동조치	추적·이력 관리	발견시 조치
실종 아동 등*	· 프로파일링시스템 조회 및 입력	· 현장수색 · 신고자·보호자 면담 및 조사 · 범죄혐의점 확인 · 최종목적지 탐문	· 생활반응 확인 등 소재 지속추적 · 위치정보, CCTV 영상·카드사용내역 · 의료기록 조회	· 지체 없이 신원파악 후 보호자 인계 ※ 단, 학대 등 미복귀 사유 확인 시에는 보호기관에 인계
18세 이상 성인	· 프로파일링시스템 조회 및 입력	· 현장수색 · 신고자·보호자 면담 및 조사 · 범죄혐의점 확인 · 최종목적지 탐문 및 CCTV 확인 등	· 생활반응 확인 등 소재 지속 추적	· 가출인에게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고지 후 신고자에게 통보 ※ 단, 가출인이 제3자에게 소재통보를 거부하는 경우 통보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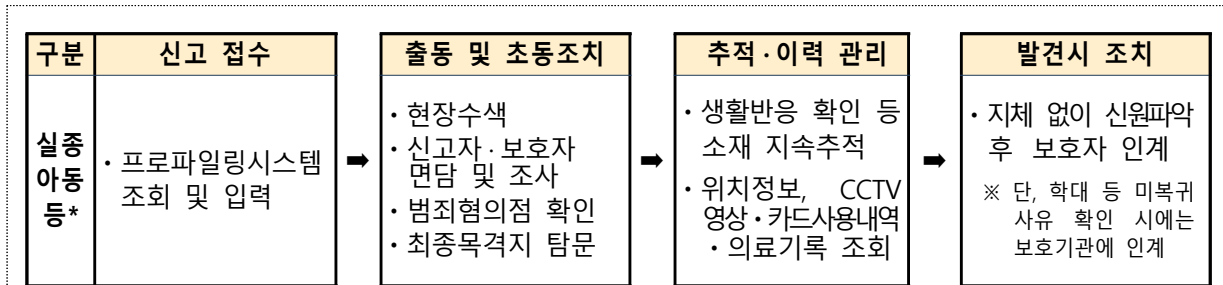
* 실종아동등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정신·지체·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67

중학생 자녀가 집을 나간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보호>

- 112·182에 전화하여 실종신고를 하시면 관할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신고처리 절차>



* 실종아동등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정신·지체·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68

상대방을 몰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꼭 관할 경찰서(피의자의 주소지, 범죄지 등)로만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사기획>

-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 고소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이때, 고소장을 접수받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은 모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피의자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범죄지)이 없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접수받은 경찰서는 관할 경찰서로 고소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 경찰은 신고·고소·진정 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으며,
-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 그로부터 매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그 외 고소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수사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규칙>

▶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데, 피해 당사자 외 제3자가 수사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기획>

- 경찰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따라서, 경찰은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범죄의 재발 방지 및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사건 등의 피의사실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

제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들을 열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획>

-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열람·복사의 범위가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되며, △ 불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 전부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경우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9조
 -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 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사기획>

-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출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것으로, 출석불응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실제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은 범죄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은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 ▶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 ⑦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⑧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⑨ 검사는 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⑩ 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⑪ 검사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3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여비 등을 주는지 등 참고인의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수사기획>

- 경찰청에서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경찰청 훈령) 및 「수사예산 및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조사시 일비 25,000원에 기본 교통비 6,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실비로 지급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수사예산 집행지침)
- ※ 원거리에서 기차·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에 따라 운임 실비를 지급하고, 이때 교통비 6,000원은 미지급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경찰청 훈령)>

- ▶ **제3조(참고인등 비용)**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참고인등의 비용으로 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고소인·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숙박료, 식비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부검, 사체의 운구·안치, 감정 및 통역·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감정료 및 통역·번역료와 여비, 숙박료, 식비
- ▶ **제4조(여비·숙박료·식비)** 참고인등의 여비, 숙박료, 식비는 소요비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74

집에서 쓰는 물건을 경찰이 압수해 갔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사심사정책>

-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증거 분석 중에 있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압수물이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환부·가환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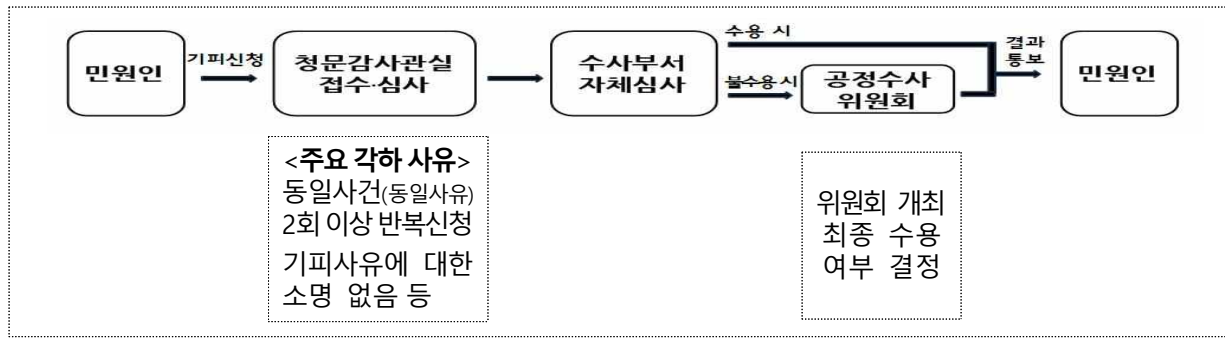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 부서에 문의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수사기획>

- 경찰에서는 수사관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이 수사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수사관 기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범죄수사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

- 기피 신청에 대한 문의는 기피 신청을 접수한 경찰관서 감사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 기피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관 기피신청 절차>



76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수사기획>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피해자 등(고발인 제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민원실 또는 수사지원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 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에 대해 알고 싶은데, 지급 대상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수사기획>

- 경찰청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8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의 지급 대상) △ 범인 검거자 △ 범인 신원정보 제공자 △ 혐의 입증 증거 제출자 △ 테러범죄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관련 법령>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보상금의 지급 기준)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경직법 시행령 제20조)
- (보상금의 신청방법)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고시규정 제11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 ▶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 ▶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을 보전하고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사심사정책>

○ 사기 피해금 보전 절차

① 지급정지 신청

- 피해자는 신속하게 즉시 경찰(112신고)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② 피해구제 신청

-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구제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 신청은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 공고를 게시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사기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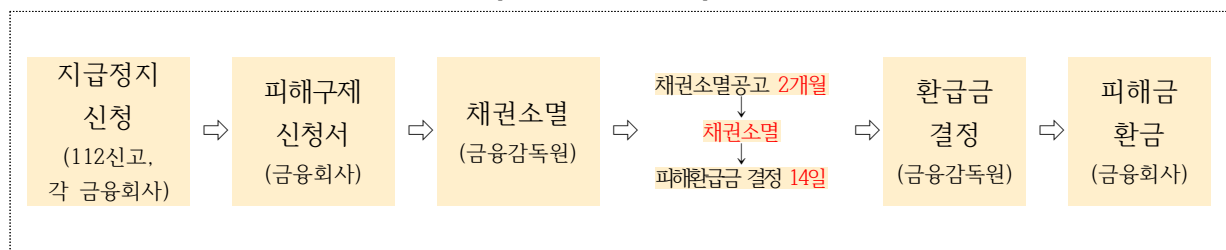
③ 피해금 환급

- 금융회사는 결정된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참고사항

-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전체 절차는 약 10주 정도 소요됩니다.
-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



79	신분증과 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악용 될까봐 걱정되는데,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경제범죄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통)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분실 시 신속히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의 경우, 상단의 면허번호가, 주민등록증의 경우 하단의 발급 일자가 신분증을 유효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재발급 시 관련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 신분증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운전면허증: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 (선 택)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면 관련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개명, 주민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명: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 방문 - 주민번호 변경: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80	투자 리딩방 대처 방법과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범죄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투자 리딩방 사기란 카카오톡·유튜브·문자 등을 통해 △ 무료 투자정보 제공, △ 수익 보장 문구로 참여를 유도한 후, 가상자산·비상장주식·선물거래 투자를 명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 (대처방법) ① 만약 투자리딩방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당장 송금을 중단하고, ② △ 범인의 전화번호 △ SNS계정 △ 대화내용 △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법) 모르는 사람이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채팅방 등 SNS에 수백 명이 있어도 모두 가짜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홈페이지·앱으로 보는 모든 화면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 사기꾼은 큰 금액을 얻고자 소액을 투자하므로, 초기 수익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전세사기 범죄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경제범죄수사>

○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사기: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 주로 발생하며, 집주인이 겹투기로 사들인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 건물 “ALL”전세사기: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전·월세 이중계약: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동일물건 이중·삼중계약: 하나의 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사소유 건물사기: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으로 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계약 체결에 따른 점검사항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물건에 대한 서류 확인 ✓ 집값 시세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인 또는 대리인 신분 확인 ✓ 관리계획 재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입 세대 열람내역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관계 재확인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82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법 요령과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범죄수사>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사진 등을 그대로 보존한 채 가까운 경찰관서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피의자를 추적할 단서 등이 필수적으로 발생 초기에 증거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여가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보호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지원받을 수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피해영상물은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즉시 삭제·차단 요청하고 있습니다.(본인도 직접 삭제·차단 요청 가능)

<보조자료>

- ▶ 경찰청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 중 확보된 피해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포함)을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여가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



- ▶ 그 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자 안전조치,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메일로 와서 첨부파일을 클릭하였더니 악성코드가 깔린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이버테러대응>

- 악성프로그램(악성코드)은 공공기관을 사칭 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여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첨부되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처벌
- 수신된 이메일의 발신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에 이상한 점이 있거나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 PC나 휴대폰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점검하시고,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니 인터넷 등을 차단(휴대폰일 경우는 비행기모드 설정)한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안권고(출처: 인터넷진흥원)

- 해킹메일 예방방법
 - 송신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 열람금지
 - 이메일 첨부 파일 중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자제
 - 이메일 내부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는 일단 의심하고 연결된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피싱·스미싱 예방방법
 -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
 -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번 더 확인
- PC 및 스마트폰 보안 강화
 - 운영체제 및 자주 사용하는 문서 프로그램(hwp, doc 등)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 수행
 -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및 수시 검사

84 로맨스스캠에 대한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범죄수사>

- **(정의)** 로맨스스캠이란 인스타그램·페이스북·데이팅앱 등 SNS를 통해 매력적인 이성, 부유한 사업가 등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투자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결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 **(대처 방법)** ① 만약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당장 송금을 중단하고, ② 범인의 SNS계정,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한 후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범인의 SNS계정은 범인 추적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장 범인 계정을 차단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법)** 모르는 사람이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로맨스스캠의 경우 접근 즉시 금원이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친분을 쌓은 후 본격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85 도난당한 물건을 돌려 받았더라도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나요? <강력범죄수사>

- 피해품 반환 여부는 절도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고와 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물건으로 착오하여 가져갔다가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 불법영득의사 :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86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접수가 맞는지, 도난신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강력범죄수사>

- 사전적 의미의 ‘분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림’, ‘도난’은 ‘도둑을 맞는 재난’을 뜻합니다.
-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전부 도둑을 맞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잃어버린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여 해당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진 경우, 타인이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기망 또는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망수법에 따라 ①기관사칭형, ②대출빙자형, ③납치빙자형 등으로 구분하며, 그밖에도 전화가 아닌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채팅과정에서 음란행위 유도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 등이 있습니다.
- 최근 보이스피싱은 △국제전화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표시하는 중계기 △카드사·관세청 등을 사칭하며 먼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미끼문자 △개인정보 탈취·전화 가로채기·도청 등 기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장악하는 악성 앱 등 범행수단과 수법이 교묘해졌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 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관한 문자,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 등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의심스러운 문자는 KISA에서 제공하는 ‘스미싱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
 - ② 특히, 악성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평소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 스마트폰(안드로이드)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위험 자동차단’ 활성화
 - ③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또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휴대전화에는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 ④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거나 개인·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112(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하면 통신·금융 대응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계좌송금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해 금융기관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비행기모드 전환 또는 전원 끄기 후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서 방문하도록 안내

88 스미싱에 대한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범죄수사>

- 스미싱[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이란 거짓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링크를 클릭 유도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설치되게 한 후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 스미싱에 대한 예방법
 - ① 문자메시지 관련 주의사항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
 -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의심스러운 링크가 있다면 전화로 확인
 - ② 스마트폰 보안설정
 -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여 미확인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
 -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 함'으로 설정
 - ③ 백신 및 보안 앱
 -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캡스 모바일 가드와 같은 무료 백신 앱을 설치하고 정기적 검사 실행
 - ④ 금융거래 보안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
 - 휴대폰 결제 비밀번호서비스(무료)를 신청하여 보안을 강화
- 스미싱에 대한 대처방법
 - ① 피해 발생 시 조치
 - 신분증, 피해 휴대폰, 피해내역을 가지고 경찰서 방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 통신사 고객센터에 스미싱 피해를 접수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FAX로 발송
 - 휴대폰 내 '다운로드' 앱에서 확장자가 'apk'파일을 확인하고 삭제
 - ② 추가 보호조치
 - 다단계 인증(MFA)을 사용하여 계정 보안을 강화
 -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나 계정 복구 코드를 절대 제공하지 않기

89 큐싱에 대한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범죄수사>

- 큐싱(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줄임말)이란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해킹행위를 의미합니다.
- 큐싱에 대한 예방법
 - QR코드 인식 시 출처를 알수 없는 '.apk'파일 설치 팝업 클릭 금지
 - 공공장소의 QR코드 스티커는 덧붙여져 있는 건 아닌지 확인
 - SNS에 음성이나 손바닥(지문) 포함된 영상 업로드 주의
 - 전화나 화상으로 금전요구 시 다른 방식으로 당사자 확인
 -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암호 만들기
- 큐싱에 대한 대처방법
 - ① 피해발생 시 조치
 - 피해발생 시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통신을 차단
 -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악성앱을 삭제
 -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 ② 금융정보 유출 시 대응
 - 카드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카드정지 후 재발급 신청
 - 금융 인증정보를 입력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
 - ③ 추가보호 조치
 -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마다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
 - 금융거래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며 QR코드 스캔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

90 파밍에 대한 대처요령과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범죄수사>

- 파밍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유출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 파밍에 대한 예방법
 - ① 보안 강화
 - OS,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등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 보안 패치 적용
 - 백신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검사
 - 공유기 보안설정 강화
 - ② 안전한 인터넷 사용습관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파일, 링크를 열지 않기
 - 무분별한 인터넷 이벤트 참여 자제
 - 공용 PC에서 메신저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 ③ 금융정보 보호
 - OTP, 보안토크를 사용
 - 컴퓨터나 이메일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하지 않기
 -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절대 입력하지 않기
 - ④ 웹사이트 확인
 - 금융거래 시 사이트 주소의 자물쇠 그림 또는 도메인 주소의 철자를 확인
 - 은행에서 제공하는 2차 인증서비스(그래픽 인증, 개인화 이미지, 나만의 은행주소 서비스 등)를 이용
 - ⑤ 추가 예방조치
 - 경찰청에서 배포한 ‘파밍캡’ 프로그램 설치하여 사용
 -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에 가입
- 파밍에 대한 대처방법
 - ① 금전적 피해 발생시 즉시 조치
 - 112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시청
 -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 ② 악성파일 제거
 -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를 검사하고 치료
 - KISA ‘보호나라’서비스 활용하거나 컴퓨터 포맷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마약 여부를 구분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약조직범죄수사>

- 마약 의심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마약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려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112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은 종류가 많고, 마약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약 의심 물건은 그대로 두고 112 또는 인근 경찰서에 발견 위치, 외형(포장형태), 의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 사건의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사건접수 후 담당 경찰관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시면 신변보호·출석 또는 귀가 시 동행 등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92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가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피해자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력범죄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당사자에게는 민사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찰은 형사적 책임에 대해 조사하며, 민사적 과실여부는 통상 보험사를 통하여 따지게 됩니다. ○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고 당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의4(당사자 순위의 결정)에 따라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 당사자로 지정합니다. 	

93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들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나 경찰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력범죄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정차 및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 -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 일반도로에서는 후방 100m, 고속도로에서는 200m 지점에 설치 ○ 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으면 구호 활동을 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에서 내려 동승자와 상대방 차량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 -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전문가가 도착할 때까지 무리한 이동은 삼가 ○ 도움 요청 등을 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가 있거나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112(경찰)나 119(소방)에 신고 -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 ○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 - 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자 등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 ○ 사고 현장의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 차량 파손 부위, 차량 번호판, 도로 위 타이어 자국 등 다각도로 사진 촬영 -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 ○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2차 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94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진행한 듯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력범죄수사>

- 사고 당사자는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한 경찰서의 직근 상급기관인 시도경찰청 교통조사계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동일한 재조사 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인 경우 △당해 신청에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신청이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 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경우 △당해 신청이 조사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조사 신청은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 교통조사계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5

차량 문콕이나 이중주차 해놓은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신고해야 하나요? <강력범죄수사>

- 주차장 등에서 주차하여 시동을 끄고 문을 여는 과정이나 운전을 위해 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른 주차된 차의 문을 충격하는 것을 일명 ‘문콕’ 사고라 하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일명 ‘손밀다’ 사고라고 합니다.
- 차량 승하차 시 발생한 문콕 사고나 손밀다 사고는 차의 ‘운전’이나 ‘교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여부가 아닌 과실 손괴 여부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 다만,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어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96

차량을 운행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팔을 쳤는데, 상대방은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염려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력범죄수사>

- 교통사고에서 도주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대법원 2001도4771 등)”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공연 등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대테러위기관리>

- 지역축제·행사, 공연 등과 같이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가 해당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고 절차 등 필요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관련 기관과 △안전관리계획 심의 △행사장 합동 사전점검 △합동 현장상황실 구축·운영(모두 지자체 주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원

< 관련 법령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⑥ 법 제66조의11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98

집회시위 소음으로 영업장(식당 등) 피해가 심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소음단속 기준과 경찰에서의 처리 절차를 알려 주세요 <경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 24:00)	심야 (00:00 ~ 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 소음피해 신고 시 경찰관이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기준 초과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에 따라 위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집회·시위 신고 후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치안정보>

- 옥외집회나 시위를 신고 후 취소하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민원실 방문)해야 합니다.(집시법 제6조제3항)
 - 이때, 철회신고서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하며,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집시법 시행규칙 제2조2의 양식 참고)
- 기존 신고된 집회 내용(일시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일시에 맞춰 집회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민원실 방문)해야 합니다.
 - 이때,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집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양식 참고)

100 우리 회사의 전문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112신고나 일반 고소 절차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안보수사지휘>

- 경찰은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기술유출* 수사를 전담하는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 방산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등
-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기술유출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첫째,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최초 경찰서로 접수 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사건 이송
 - 둘째,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온라인 113 신고센터 이메일(techpol@police.go.kr)로 신고서(기명)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온라인 113 신고센터’에서 ‘익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셋째,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번 없이 113으로 전화하시면 접수요원이 우선 신고를 접수하여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인계하고, 신고를 인수받은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 기술유출 사건을 신고하실 때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 피의자의 인사자료, 피의자가 기술을 유출한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록 접근내역, 로그기록 등), 유출된 기술에 대한 설명자료 등
-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된 증거확보를 위해 침해 현장상황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물품을 보존하고, CCTV,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1 불온서적이나 대남 전단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안보수사지휘>

- 현재 불온서적이나 대남 전단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 관련하여, 과거 「북한불온선전물수거처리규칙(경찰청 훈령, '97. 7. 31. 제정)」에 따라 대남전단 신고 시 보상품(문구 등)을 지급하던 때가 있었으나, 2007년 관련 규칙이 폐지되어 현재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자료>

- ▶ 북한불온선전물수거처리규칙(경찰청훈령, '91. 7. 31.) <'07년도 폐지>
- ▶ 북한 '빠라' 신고해도 이젠 학용품 안 준다(문화일보, '07. 10. 31.)

102

공사 중 실탄, 무기 등을 발견하거나 등산 중 대남풍선을 발견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보수사지휘>

- 우선 실탄이나 무기, 대남풍선 발견 시 즉시 경찰(112)이나 군부대(1338)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발견 물체는 폭발하거나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야 하며, 경찰이나 군부대 등이 도착할 때까지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신고 후 경찰 등 도착할 때까지 발견 장소를 보존하고 다른 사람 접근을 막아야 하며, 경찰 등 도착 시 발견 경위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 실탄이나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103

간첩 등 안보 사범이 많이 있는지, 실제 얼마나 검거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보수사지휘>

- 간첩 등 안보사범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어, 경찰은 꾸준히 검거하고 있습니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간첩*	2	10	4	3

* 간첩 검거 건수 : 형법상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목적수행 혐의 검거건수

「22. 8. 22. 동아일보」

- 또한, 최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등 안보위협 양상이 변화 중으로, 경찰은 최근 5년간('20.1월~'24.12월까지) 600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 총 1,48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 국민 모두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안보위해사범을 적극 신고해 주신다면, 간첩 등 안보 사범의 위협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① 피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 피해자가 해외에서 현지 경찰 또는 한국대사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귀국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합니다.

가. (해외에서 신고한 경우)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이 현지 경찰 또는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범죄 신고를 전달받아, 국제공조를 실시합니다.

나. (국내에서 신고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지역경찰관은 경찰서 수사 부서에 사건을 인계하고, 담당 수사관은 사이버 국제공조 포털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에 국제공조를 요청합니다. 이후 이를 접수한 국제공조담당관실이 국제공조를 실시합니다.

※ 최초 신고접수 경찰관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 해외 발생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

② 피해자가 귀국한 경우

- 피해자 본인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를 신고합니다.
- 이후 진행 절차는 위 “국내에서 신고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 긴급성을 요하는 강력범죄 (납치·감금 등)의 경우

-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 “112”를 통해 해외 발생 범죄를 신고하고, 이를 접수한 지역경찰관은 신속히 경찰서 수사부서에 사건을 인계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에 연락하여 신고 내용을 유선통보하고, 사이버 국제공조 포털시스템을 통해 국제공조를 요청합니다.

※ 최초 신고접수 경찰관은 피해자 가족 등이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 해외 발생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

☎ (평일 업무시간) 국제공조담당관실 인터폴공조계: 02-3150-0381, 0391
(야간·휴일) 국제협력관실 당직: 010-4778-0882

- (해외에 있는 자가 신고) 제3자가 해외에서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내 피해자 가족 등을 통해 신속히 “112”에 신고하거나, 현지 한국대사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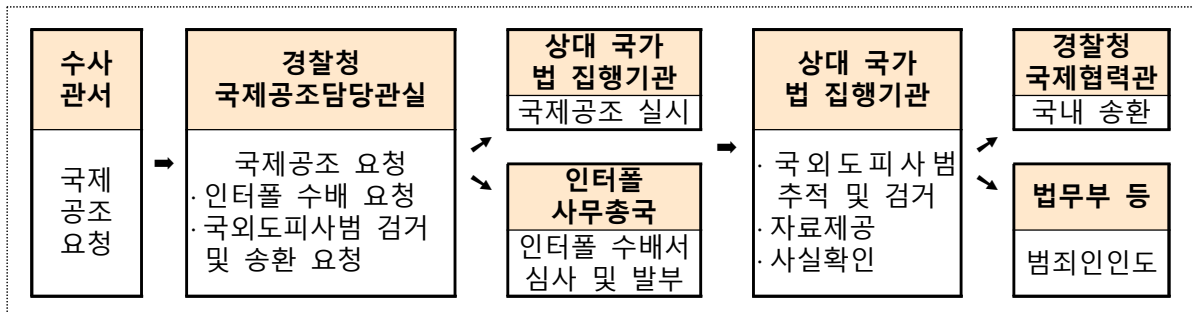
가. (국내 가족 등이 “112” 신고) 위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한 절차와 동일합니다.

나. (현지 한국대사관에 신고) 한국대사관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및 외교부에 범죄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이를 전달받은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신속히 국제공조를 실시합니다.

105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검거할 수 있나요? <국제공조>**

- 국외도피사범 발생 시 국제공조 처리 절차
 - 국내 수사관서는 피의자(피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 후, 사이버 국제공조 포털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로 국제공조*를 요청합니다.
 - * △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 현지 검거 및 국내 송환
 - 국제공조 요청을 접수한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발부받고, 이를 근거로 도피 상대국 법 집행기관 등과 피의자를 집중 추적합니다.
 - 이후 피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될 경우, 현지 당국 등과 조율하여 송환 일정 및 방법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경찰청 호송팀을 현지로 파견하여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합니다.
 - 단, 한국 법령 및 영장의 효력이 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한국 경찰이 해외 소재 피의자를 직접 검거할 수 없고, 현지 경찰이 검거 후 송환 시 신병을 인수함

<인터폴 국제공조 처리 절차>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 ('23. 9월 개정)>

1.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
 - 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활동한 자
(「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살인, 상해,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를 범한 자
 - 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한 자
 - 라. 적법한 자격 없이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출입 또는 유통한 자
(단,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소지 또는 투약만 한 자는 제외함)
 - 마. 전화금융사기 또는 범죄 금액 5억 원 이상 경제범죄를 범한 자
 - 바. 범죄 금액 100억 원 이상의 사이버도박을 조직하거나 운영한 자
 - 사.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지식재산 범죄를 범한 자
2. 그 밖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폴 적색수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 역 사 회
경 찰 활 동

FAQ 100선

발행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지역경찰역량강화과

발행일

2025년 1월